

#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업무(신용공여정보&랩투자일임성향관리)

최근개정일: 2024.02.29

#### Key Point

- ✓ 투자자성향 등록 당일 또는 정정 당일 성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평가 사유 등록 후 투자성향 변경 가능, 단, 온라인채널의 경우 1일 평가 가능횟수 최대 3회
- ✓ 신용공여 고객정보 확인서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공여 상품위험등급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투자권유 수행

(신용공여 투자 위험등급 : 매우높은위험(1등급) / 고객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투자일임·금전신탁 계약시 투자성향 분류 절차 고객투자성향(2145) + 투자일임성향(9217) + 투자기간(2145의 질문4)

## 업무개요

#### 가. 투자자정보 확인서

- 1)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고객의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임
- 2)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3)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주민번호 기준)
- 4)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분류되는 투자성향은 5개 등급으로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 나. 신용공여 고객정보 확인서

- 1)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고객이 대출성상품 거래를 위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 2) 대출성 상품에 고객의 성향이 적정/부적정에 따라 추가 확인 및 고지 필요
- 3) 유효기간 : 24개월

#### 다.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 확인서

- 1)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고객이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 계약을 위해 추가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성향을 재분류하고 투자예정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자유형을 분류함
- 2) 유효기간 : 연1회 이상 확인, 매 분기(3개월)마다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 고객 확인 요청 \* 랩의 경우 분기마다 운용보고서 발송시 대상자 추출 후 함께 고객 통지
- 3) 투자일임·금전신탁 계약시 투자자성향

- 예) 투자자성향 적극투자형, 투자일임성향 10점, 투자기간 단기인 경우
  - □ 투자일임성향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투자예정기간 감안시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위험중립형
  - □ 최종 투자일임 계약성향 : 위험중립형

##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가능여부 / 가능시간

#### 가. 등록 / 해지

구 분	ODS	내점	유선	대리인	NET	온라인 채널
투자자정보확인서	0	0	Δ	0	0	HTS/홈페이지, MTS, 모바일웹
신용공여정보확인서	0	0	Δ	0	0	HTS/홈페이지, MTS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 확인서	0	0	Δ	0	0	없음

<sup>\*</sup>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만, 법인인 당사에 등록된 대리인만 유선 허용

## 나. 가능시간

1) ODS / 내점 / 유선 : 영업일 영업점 업무시간 내

2) 온라인채널: 365일 08시 ~ 23시 30분

## 징구서류

관련서류		개인	법인		
	본인	가족대리인	일반대리인	대표자	일반대리인
계좌주 실명확인증표	•	-	•	-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	_	•	-
가족관계 확인서류	-	•	_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_	•	•
위임장	-	-	•	-	•
당사양식	투자자정보확인서 (필요시) 신용공여정보확인서 (필요시) [투자일임/금전신탁]투자자정보확인서 거래인감/서명				

## [참고] 서류징구시 확인사항

- □ 동일한날 개설 등의 업무 처리시 징구한 관계서류가 있다면 징구서류 원본이 어디에 징구되었는지 내용 기재 (별도 첨부 불필요)
- □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 투자자정보 확인서

1) 투자자 성향 분석 및 결과 제공 절차



#### 유선 접수시 본인확인 방법

(원칙) 회사에 등록된 고객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만 고객으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확인 후 유선업무 처리 가능

(법인) 법인유선대리인으로 등록된 대리인에 한해 유선 가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한해 유선 가능

(예외) 회사에 미등록된 고객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계좌번호, 비밀번호 확인 외에 추가적으로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약정은행명, ID」의 6가지 정보 중 3가지 정보를 확인 후 유선업무처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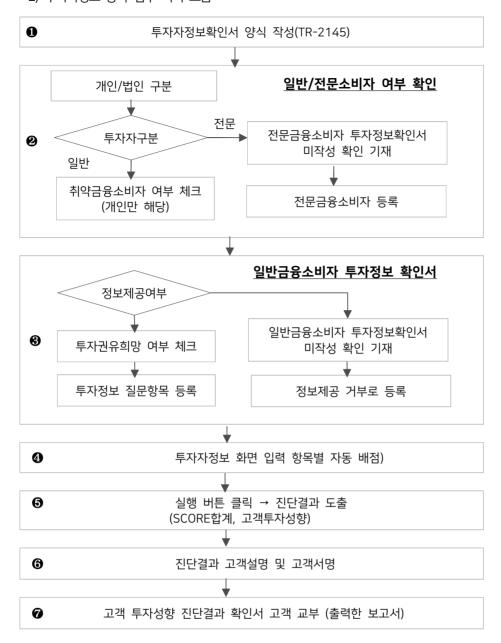
★ 유선으로 고객정보 확인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를 위해 연락처, 주소의 경우 일부는 직원이 알려주고, 일부는 고객이 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 연락처 : 고객님 연락처가 02-6915 뒷자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 주 소 : 고객님 주소가 서울시 영등포구 나머지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내 용
<b>①</b> 실명(본인) 확인	• (내점) 신분증 확인 (실명확인, 진위확인) • (유선) 당사 유선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진행
<b>②</b> 징구서류 확인	• (내점) 동일한날 개설 등의 업무 처리시 징구한 관련서류가 있다면 징구서류 원본이 어떤 서류에 징구되어 있는지 내역만 기재하고 별도 첨부 불필요 • (유선) 신청서는 접수받은 직원이 작성 : 통화자, 통화일시, 고객연락처 등
<b>③</b>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정보확인서」당사양식에 맞춰 고객의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 등 질문항목 작성
<b>④</b> 투자성향 분석	• 화면명 : [2145] 투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 • 당사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기준에 따라 자동배점 되어 투자성향 분류
<b>⑤</b> 분석결과 고객확인	<ul> <li>고객에게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가능 상품등급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의미를 설명함</li> <li>설문문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신 내용과 진단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 시킴</li> <li>분석결과 고객확인 (고객명 자필기재 및 서명)</li> </ul>
<b>⑥</b> 투자성향 분석결과 제공	투자성향 분석결과서(투자자정보확인서) 고객 교부     투자성향에 맞게 적합한 금융상품 투자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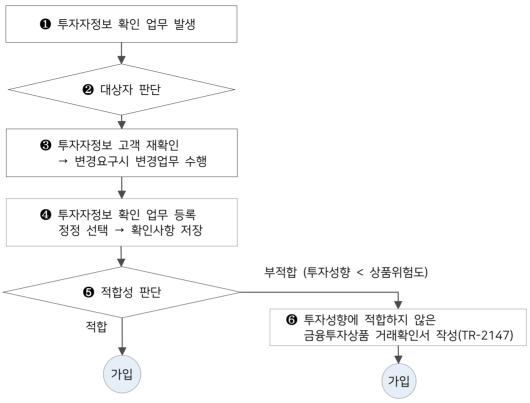
#### 2) 투자자정보 등록 업무 처리 흐름



#### 취약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 □ 취약금융소비자란 고령자(만 65세이상), 은퇴자, 주부 등을 말하며,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추가 확인 필요
- □ 고령자(만65세 이상)의 경우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 투자성향 보다 한 단계 초과한 상품은 상품 가입이 불가함
  - \* 안정추구형 고객의 경우 "부적합거래확인서" 작성시 중위험 상품은 가입이 가능하나 고위험/초고위험 상품은 가입불가
- □ 투자자정보확인서 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고객 중에 취약금융소비자(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상품 가입시 불이익사항(손실위험 등)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내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 \* 대상상품 : CP, 전단채, ELS/DLS/ELB, 회사채, 후순위채, 해외채권, 집합투자증권, 특전금전신탁, Wrap, 선물옵션 계좌개설, 신용대출 약정, 파생형ETF, ELW

## 3) 투자자정보 확인 업무 처리 흐름



내 용
• 투자권유 및 투자성향 확인이 필요한 업무 등 • 금융투자상품 관련 부서에서 상품 판매시 별도 공지 예정
<ul> <li>전문투자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li> <li>일반투자자의 경우 정보제공 미등록고객은 투자자정보 등록절차를 수행하며, 그외 고객은 투자자정보 재확인 절차를 수행</li> </ul>
• 기 등록된 투자자정보 내역을 설명 및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교부 • 기존 정보와 동일한 경우, "기존 정보와 동일"란을 체크하고 고객 확인 서명 • 투자자정보확인서 미작성 고객이 계속 미작성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 업무 없음
<ul> <li>고객이 "기존 정보와 동일"로 기재 및 확인하여 서식을 제출한 경우</li> <li>투자정보확인서(TR-2145) 정정선택 후 확인사항 저장</li> <li>→ 정보확인사원번호 및 투자정보확인서 만료일 확인</li> </ul>
• 갱신 후 투자자정보를 기준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투자권유 수행
• 부적합시 투자권유 불가 •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을 투자한다는 확인서 작성 (TR-2147)

- 4)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
  - 투자자성향 등록 당일 또는 정정 당일 성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평가 사유 등록 후 투자성향 변경 가능. 단, 온라인채널의 경우 1일 평가 가능횟수 최대 3회
  - 2 재평가 사유 (다음 중 하나)
    - □ 단순 기재 오류
    - □ 사실 관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
    - □ 직원 입력 오류 (온라인채널의 경우 제외)
  - 3 고객확인사항
    - 본인은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 단순 기재 오류 □ 사실 관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 □ 직원 입력 오류)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며, 금융상품 판매자의 유도에 의한 변경 또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위한 변경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참고] 금융위/금감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 내용 반영

소비자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시 변경을 허용함

#### 3) 고객의 투자성향 및 특징

투자자성향	투자가능 상품등급	특징
공격투자형	매우높은위험 이하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형 및 대안 투자형에 투자
적극투자형	높은위험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투자수익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형 및 대안 투자형 등의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위험중립형	보통위험 이하	주식형과 채권형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예·적금 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안정추구형	낮은위험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안정형	매우낮은위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5) 투자성향 분류

- ①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0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합산이 42점인 경우, 42점/50점 X 100 = 84점
- ❷ 점수결과에 따라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20점 이하	안정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적극투자형
80점 초과	공격투자형

6) 당사 투자자정보확인서 Scoring 기준: [별첨1] 참고

#### 나. 신용공여 정보 확인서

1) 신용공여 적합/적정여부 판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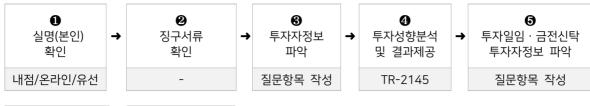
구 분	내 용
<b>①</b> 실명(본인) 확인	(내점) 신분증 확인 (실명확인, 진위확인)     (유선) 당사 유선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진행
<b>❷</b> 징구서류 확인	(내점) 동일한날 개설 등의 업무 처리시 징구한 관련서류가 있다면 징구서류 원본이 어떤 서류에 징구되어 있는지 내역만 기재하고 별도 첨부 불필요     (유선) 신청서는 접수받은 직원이 작성 : 통화자, 통화일시, 고객연락처 등
<b>❸</b> 투자자정보 파악	• 화면명 : [2145] 투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 • 「투자자정보확인서」당사 양식에 맞춰 고객의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 등 질문항목 작성
<b>4</b> 투자성향분석 및 결과제공	<ul> <li>화면명: [2145] 투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li> <li>고객에게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가능 상품등급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의미를 설명하고 「투자자확인서」 양식에 고객확인 (고객명 자필기재 및 서명)</li> </ul>
<b>⑤</b> 신용공여 투자권유시 적합성보고서 작성	<ul> <li>화면명: [2868] 투자 적합성보고서 등록 및 출력 (직원작성용)</li> <li>고객의 투자성향과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공여 상품위험등급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투자권유 수행</li> <li>신용공여 투자가능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1등급)</li> <li>고객투자성향: 공격투자형</li> </ul>
<b>⑥</b> 신용공여 고객정보 파악	• 화면명 : [2243] 신용공여정보확인서 등록/변경 • 「신용공여정보확인서」당사 양식에 맞춰 고객의 대출용도, 연령, 보유자산 등, 신용점수 질문항목 작성
<b>♂</b> 고객의 적정성 판단결과 제공	<ul> <li>화면명: [2243] 신용공여정보확인서 등록/변경</li> <li>고객의 신용공여 정보를 활용하여 출력된 보고서에 적정성 판단결과 부적정한 경우 「적정성판단보고서」를 고객에게 확인받고 교부함 (고객명 자필기재 및 서명)</li> <li>적정/부적정 판단 기준에 따라 부적정 시 [TR-2147] 부적합(부적정) 거래확인서 등록 필요</li> <li>신용공여 부적정 판단기준</li> <li>(개인) □ 만80세 이상 □ 신용점수 515점 이하 ※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송출된 점수 자동호출</li> <li>(법인) 없음</li> </ul>

## [참고] 신용/대출 약정시 불가 체크사항

- □ 신용공여 고객정보 확인서 미등록(or 유효기간 만료) 고객
- □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
- □ 신용점수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 G2(G4) 항목 동의 필수

### 다.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 확인서

1)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성향 분류 절차



<b>⑥</b> 투자일임·금전신탁 분석 및 결과제공	<b>→</b>	
TR-9217		TR-2868 (직원작성)

구 분	내 용
<b>❶</b> 실명(본인) 확인	• (내점) 신분증 확인 (실명확인, 진위확인) • (유선) 당사 유선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진행
<b>❷</b> 징구서류 확인	(내점) 동일한날 개설 등의 업무 처리시 징구한 관련서류가 있다면 징구서류 원본이 어떤 서류에 징구되어 있는지 내역만 기재하고 별도 첨부 불필요     (유선) 신청서는 접수받은 직원이 작성 : 통화자, 통화일시, 고객연락처 등
<b>❸</b> 투자자정보 파악	● 「투자자정보확인서」 당사 양식에 맞춰 고객의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 등 질문항목 작성
<b>❹</b> 투자성향분석 및 결과제공	<ul> <li>화면명: [2145] 투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li> <li>고객에게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가능 상품등급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의미를 설명하고 「투자자확인서」 양식에 고객확인 (고객명 자필기재 및 서명)</li> </ul>
<b>⑤</b>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 파악	<ul> <li>화면명: [9217] 랩투자일임성향관리</li> <li>「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확인서」당사 양식에 맞춰 본인의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 투자목적 등 질문항목 작성</li> </ul>
<b>⑥</b> 투자일임·금전신탁 분석 및 결과제공	<ul> <li>화면명: [9217] 랩투자일임성향관리</li> <li>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해당화면 체크 필수</li> <li>부적합 판단 기준에 따라 부적합 시 [TR-2147] 부적합(부적정) 거래확인서 등록 필요투자일임(랩)의 경우 부적합확인서 징구를 통한 상품가입 불가</li> </ul>
<b>⑦</b> 투자권유시 적합성보고서 작성	<ul> <li>화면명: [2868] 투자 적합성보고서 등록 및 출력 (직원작성용)</li> <li>해당화면은 고객투자성향(2145)과 상품위험등급을 비교하여 적합성을 판단하는 화면으로 반드시 [9217]의 최종 투자성향 확인</li> <li>고객의 투자일임·금전신탁성향과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일임·금전신탁 상품위험등급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투자권유 수행</li> </ul>
	<b>랩투자일임계약시 최종 투자성향</b> 고객투자성향(2145) + 투자일임성향(9217) + 투자기간(2145의 질문4)

- 2) 당사 투자일임·금전신탁 투자자정보확인서 Scoring 기준
- ❶ 문항별 배점
-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
- □ 10% 미만 (1점) □ 10% 이상 ~ 20% 미만 (2점) □ 20% 이상 ~ 30% 미만 (3점) □ 30% 이상 (4점)
- 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1~2개월) 동안 예상 손실한도를 넘어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
- □ 포트폴리오 모두 환매 (1점) □ 포트폴리오 일부 환매 (2점) □ 관망 (3점) □ 신규 투자자금 추가 불입 (4점)
- 투자목적
-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1점)
-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2점)
- □ 시장(ex.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3점)
- □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실현 목적 (4점)
-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5점)
- **②**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시 투자성향 분류
- 3점 이상 ~ 5점 이하 : 투자성향 한단계 하락
- 6점 이상 ~ 9점 이하 : 투자성향 유지
- 10점 이상 ~ 13점 이하 : 투자성향 한단계 상승
- ❸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시 투자자성향 점수 계산 방법

[2145]에 의해 분류된 투자성향에서 [9217]에 의해 파악된 정보를 고려하여 투자성향을 재분류하고, 투자예정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자유형을 분류함

- 예) 투자자성향 적극투자형, 투자일임성향 10점, 투자기간 단기인 경우
  - 투자일임성향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투자예정기간 감안시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위험중립형
  - 최종 투자일임계약성향 : 위험중립형

# 위임전결 / 관련규정

- 가. 위임전결: 업무팀장 전결
- 나. 관련근거
- 1) 투자권유규정
- 2)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자산운용에 관한지침

# 8 관련화면

화면번호	화면명	화면설명
2145	투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	• 고객의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 등 등록하는 화면
2243	신용공여 고객정보 확인서	• 신용/대출 약정등록 이전에 대출용도, 연령, 보유자산등, 변제계획, 신용점수를 등록하는 화면
9217	랩투자일임성향관리	• 투자일임·금전신탁 계약시 추가 등록하는 화면
2148	투자자정보확인내역 조회	• 투자자정보확인서, 신용공여고객정보 등록내역 조회
W211	랩투자일임성향 이력 조회	• 계좌별/기간별 랩투자일임성향의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

#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 문항별 배점

1번 (개인)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④로 응답한 경우 3점 ⑤로 응답한 경우 2점	
1번 (법인)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2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3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4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파생상품	K,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 배점없음	
5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6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7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8번 (개인)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8번 (법인)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9번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10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11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2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0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 예)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이 42점인 경우, 42점/50점\*100 = 84점

####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20점 이하 : 안정형

·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 초과 ~ 80점 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 ₩ 제·개정이력

제·개정일자	재·개정 내역	검토부서	작성부서/작성자
2024-02-29	· (제정) 업무매뉴얼 전면개편	상품운용부 WM지원	업무개발부/김영수